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2. 11. / (총 25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양 정 석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송 은 철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중앙방역대책본부	팀 장	홍 정 익		043-719-9370
대응관리팀	담 당 자	진 여 원	· 전 화	043-719-9365
문화체육관광부	과 장	윤 태 욱	전 화	044-203-2731
공연전통예술과	담 당 자	오 종 석		044-203-2736
문화체육관광부	과 장	임 성 환		044-203-2861
관광산업정책과	담 당 자	정 슬 기		044-203-2870
문화체육관광부	과 장	신 용 식		044-203-2841
관광기 반과	담 당 자	김 명 혜		044-203-2842
문화체육관광부	과 장	강 성 태		044-203-2311
종무1담당관	담 당 자	손 문 희		044-203-2317
법무부	과 장	김 태 형		02-2110-4090
이민정보과	담 당 자	이 우 진		02-2110-4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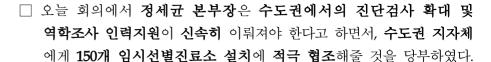
코로LHHOI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소통추진 실적 및 계획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전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 소통추진 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특히, 임시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및 타액검사, 신속항원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각 검사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수도권 역학조사를 돕기 위해 **군·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워 인력이 현장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최근 화진자 급증에 따라 화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이나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병상 등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하게 지시하였다.
- **수도권**의 경우 **가용 병상이 거의 가득 차** 확진 판정 이후 **입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도권 공공병원 2~3개를 대상으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인력 등은 중수본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 경증·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하나. 확진 후 센터 배정에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 중수본에게는 각 지자체별 생활치료센터 목표치를 할당하고 매일 점검하는 한편, 중수본 직영 생활치료센터도 추가 운영 확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 행안부에게도 각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병상 등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주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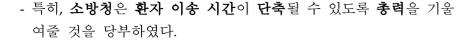








평 생 친 구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이 전체 3분의 1이하로 줄었다고 언급하였다.
- **각종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도 중단**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올 연말 '최악의 돌봄난'을 맞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부에게 중수본과 함께 **돌봄공백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이동량 분석 결과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 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12월 8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5,531천 건, 비수도권 12,923천 건, 전국은** 28,454천 건이다.
 - 직전 주 화요일(12월 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3%**(488천 건), 전국은 1.6%(454천 건) 감소하였다.











평생 친구

- 한편, 수도권 거리 두기 1.5단계를 발표했던 2주 전 화요일(11월 17일)과 비교하면 **수도권 이동량이 15.8%**(2.923천 건) **각소**하였다.
- * 수도권: (11.17.) 18,454천 건 → (12.1.) 16,019천 건 → (12.8.) 15,531천 건 전 국: (11.17.) 33,398천 건 → (12.1.) 28,908천 건 → (12.8.) 28,454천 건

< 일일 휴대폰 이동량 >



2 │ 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검사 대상 확대, 방역 지원지역 선정**을 통한 정밀방역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선제검사** 시행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방역관리자·종사자 등 교육**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
 - * 2회/일 증상 모니터링 및 환자는 필요 시 검사, 종사자는 업무 배제, 마스크 착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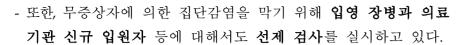












- 발생 양상 등 고려하여 **방역 지원지역을 선정**하고 **방역 인력** 과 비용 등을 지원하여 2주간 예방 교육, 검사 확대, 취약시설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감염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 □ **무증상 감염원의 조기 발견**을 통한 감염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의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3주간을 수도권 집중** 검사 기간으로 운영한다.
 - 이를 위해 환자 발생상황,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 등 약 150개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 * 예시) 대학가, 서울역·용산역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 탑골공원 등 집단 발생 지역
 - ** 지자체별로 12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예정
 - 향후 환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권 집중 검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 검사법이 적용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
 -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확인검사 실시











- ※ (비인두도말 PCR검사) 코 속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 이후 PCR 검사
 (타액검체 PCR검사) 타액을 별도의 검체통에 뱉은 뒤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코 속 깊숙이 면봉을 집어 넣어 검체 채취, 이후 검사키트에 검체를 혼합한 용액을 떨어뜨려 현장에서 30분 후 결과 확인
- 또한,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하여 **검사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하다.
- 한편, 시·군·구별로 부녀회, 이통장협의회 등 지역 기반 조직·단체, SNS,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진단검사 확대를 적극 홍보하고 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 □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하는 등 원하는 경우 보다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지난 12월 8일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였으며,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 진료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 이와 함께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등에 상관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 □ 한편,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
- 12월 14일(월)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검사 비용은 16,000원 내외이며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만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 가로 실시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 제고**를 위해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 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도 배가하기 위해 **인력 지워도 확대**한다.
- 질병관리청의 중앙 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이 12월 9일부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수도권 22명)에 파견되어,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심충결과 분석, 자료 관리, 집단발생지역 위험도 및 환경 평가 등 일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워 인력 810명을 파견하여 추적조사 지원, 역학조사 통보, 긴급 검체 수송, 역학조사 결과 입력,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 정부는 어제(12.10.)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점검 하였으며,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을 설치하여 역학 조사와 진단검사, 병상 인력 지원 등 대응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 및 소통 추진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로부터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 및 소통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문체부는 종교계와 협력하여 연말연시 종교행사와 관련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 논의와 함께 종교계에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및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종교계에서는 정규예배는 물론이고 성탄절 관련 대표 종교행사 등 을 비대면으로 전화하거나 취소 또는 축소하는 등 방역관리에 협 조하고 있다.
 - 종교활동은 수도권 2.5단계에서는 비대면 전환, 수도권 외 2단계 지역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 문체부와 지자체는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함께 점검하고 행정지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말연시 방역협조를 요청하였다.
- □ 앞으로도 문체부는 연말연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비대면 예배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등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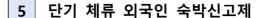


4 공연 숙박 등 예약취소 불이익 최소화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숙박·** 여행상품 등의 취소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만하게 해결함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 먼저,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관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협회 등 민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매 취소 수수료 면제 내용 등에 대해 관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다.
 -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전액 감경하고, 2단계 또는 2.5단계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 문체부는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관련 협회, 지자체 등을 통해 **숙박업계에 안내**하여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발행이 중단된 여행 할인상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행사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처리와 함께 취소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처리도 함께하고 있다.
 -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따른 여행사 운영비(상담·예약 창구 운영, 여행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의 보전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 숙박시설 및 식당 사전예약. 철도 등 교통편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2월 10일부터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숙박신고제를** 시행하다.
- 숙박신고제는 **'관심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 등의 상황에서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 숙박신고제가 적용되면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숙박업소 투숙 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숙박업자*는 제시받은 외국인의 여권 등 정보를 E-MAIL, FAX,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법무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신고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21년 상반기에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단기 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전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 증상이 없는 일반 시민도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즉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 대해 2주 단위 정기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8개 병원에 800여 병상을 운영 중이다.
 - 앞으로도 음압기 등 의료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도 확대하고 입소절차를 개선하여 자택대기 확진자를 해소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는 최근 1주일(12.5.~11.) 동안 총 32명, 하루 평균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선 지난 12월 8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평생친구

- 한편, 12월 한달 동안 코로나19 방역 동참 캠페인을 시행하여
- ① 외출 및 이동자제, ② 대면접촉 최소화, ③ 마스크 꼭 착용,
- ④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서 쉬기, ⑤ 연말연시 모임 행사 자제 등 방역 주요 실천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10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104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7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257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135명 감소하였다.
- 어제(12.1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이 중 2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 중이다.
- □ 12월 10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8021개소**, ▲노래연습장 2,305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863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 붙임 > 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3.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 4. 감염병 보도준칙
- < 벌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침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평생친구

붙임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 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 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m²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m'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미 직접판매용		▶ 집합금지	
노래연합	슼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		▶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키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평생친구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괸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홰(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괸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 (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 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 안전·코로 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 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평생친구

붙임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정군전대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7604040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포네한답경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스탠딩공연장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일반음식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frac{1}{2}\) \(\frac{1}{2}\) \(\frac{1}{2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18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m²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 인원 30% 이내로 제한
 -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평생친구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 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 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평 생 친 구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 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평생친구

붙임3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12.8. 기준)

	지역		단계조정내용			
卍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 단계	^{연화} 추가조치 내용
1		서울	12.8.~12.28.	서울 전지역	2.5(†)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금지
2	수도권	경기	<u>12.8.~12.28.</u>	경기 전지역	2.5(†)	(학원) '21년 대입, 직업훈련외 집합금지(아파트) 헬스장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금지
3		인천	<u>12.8.~12.28.</u>	인천 전지역	2.5(↑)	·(파티룸 등) 숙박시설 주관 연말행사 금지
4		세종	12.8.~12.28.	세종 전지역	2(↑)	∘(피시방)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유무 무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피시방, 목욕장업
5		대전	<u>12.8.~12.28.</u>	대전 전지역	2(†)	-
6	충청권	충북	12.9.~12.28.	충북 전지역	2(†)	○(모임·행사) 2.5단계 기준 적용(50인↓) +농협등 만단체 선거운동 금지 타시도 기족과 방문, 초청 자제 등(결혼장례식은 2단계 적용) ○(종교활동) 합창 등 노래행위 금지 ○(노인요양시설 등) 종사자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종교활동 참여 금지 권고 등
7		충남	12.8.~12.14.	충남 일부지역	2(†)	《목욕장업》사위니한증막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마트·백화점》 시식금지 《아파트 등》 단지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편의점 22~05시 매장내 취식 금지
8		광주	<u>12.7.~12.28.</u>	광주 전지역	2(†)	∘(집합금지) 방문·다단계·방문판매업 등
9	호남권	전북	<u>12.8.~12.28.</u>	전북 전지역	2(†)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제한(50%↓)
10		전남	<u>12.8.~12.28.</u>	전남 전지역	2(↑)	-
11	경북권	대구	<u>12.8.~12.28.</u>	대구 전지역	2(†)	-
12	010	경북	<u>12.8.~12.28.</u>	경북 전지역	2(†)	-
13	경남권	부산	<u>12.1~12.14.</u>	부산 전지역	2(†)	∘(노래연습장) 초·중·고등학생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류 운동 금지 ∘(학원) 대입 외 관악기·노래강습 금지 ∘(사적모임) 10인이상 모임 취소 강력권고
14		울산	<u>12.8.~12.28.</u>	울산 전지역	2(↑)	-
15		경남	<u>12.8.~12.28.</u>	경남 전지역	2(†)	-
16	강원	원 강원 <u>12.8.~12.14.</u> 원 강원	강원 일부지역	2(†)	춘천, 원주, 강릉, 횡성, 영월, 정선, 철원, 양구	
	0 11	0 1:	<u>12.8.~12.14.</u>	강원 일부지역	1.5(†)	됆뱨쎰쑋횄황했뗀괭양
17	제주	제주	<u>12.4.~별도명령시</u>	제주 전지역	1.5(↑)	-













붙임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추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평생친구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항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